

제403회 정례회
'22. 9. 16.(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조성태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2년 9월 7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8일

3. 제안사유

- 「혈액관리법」에서 위임한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헌혈증진 및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명확히 규정(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규정(안 제2조)

다. 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신설(안 제4조)

-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대응, 홍보 및 헌혈 기부 문화 확산 방안 등에 관한 사항 협의

라.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15명 이내로 구성(위원장: 담당국장,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위촉직)도의원,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경찰청, 의료기관, 혈액원 등

마. 위원의 임기 신설(안 제6조)

바. 위원장 직무, 간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제8조)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10조제2항, 안 제12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대진)

가. 제출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이 감소함에 따라 지자체 혈액 수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비상시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주민·단체·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혈액위기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조례의 개정 취지 및 개정안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개정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충청북도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목적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도민들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약칭을 규정(“도지사”, “도민”)하고 있으며, 조례의 내용 및 형식적으로 타당함.

○ 안 제4조는 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혈액관리법」 제4조의6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목적을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에서 규정한 협의회의 협의사항은 협의회의 목적에 부합함.

○ 안 제5조는 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혈액관리법」 제4조의6은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안은 위촉직 위원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경찰청, 의료기관,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를 비롯하여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도민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혈액관리법

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 안 제6조~제8조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의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한 것은 관련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민 참여 확대가 가능하며,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 현행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시행규칙 삭제와 관련하여,
- 조례에 별도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함이 타당함.
- 그 외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10조제2항, 안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한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내용적으로 타당하며, 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헌혈증진 및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